

의안번호	2209698
의 퇴 인	안상훈 의원
회 답 일	2025. 4. 29.
추 계 번호	25C2210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‘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’의 소속 기관장이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(연평균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,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 3,500만원(연평균 2,700만원)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노인학대예방 교육(안 제39조의6)	45	-	45	-	45	135	2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)	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의 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※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(기존) 노인복지시설,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, 장기요양기관 (개정)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·시설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‘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’에게 소속 기관장이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신고의무자 중 국가·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아닌 곳에 대하여는 각 기관·시설에서 자체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을 나라배움터 등 8곳의 온라인 플랫폼에 주기적으로 탑재
 - － (탑재처) 나라배움터,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, 서울시 평생학습포털, 경기도지식, 중앙교육연수원,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, 한국사회복지협의회, 대한병원협회
 -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례를 참고하여,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 온라인 플랫폼에 교육 영상을 탑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－ 참고한 사례의 최신 제작단가와 최근 제작 주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
 - －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공통교육 영상 제작에 4,500만원 소요
 - － 공식적으로 설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공통교육 영상 제작 주기는 없으나 보건복지부는 관련 공통교육 자료를 2021년과 2023년에 제작하였으므로, 본 추계서는 2년 주기로 관련 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‘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’의 소속 기관장이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,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 3,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2]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45	-	45	-	45	135	2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